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김성인 의원의 3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남 은 기 의원

나. 개정이유

-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하도록 하고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12조의 2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 2(전문위원) ①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②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(신설)	제12조의 2(전문위원)①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 ②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